

월급여 증명서

승선자 (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)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
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 사람
의 4·16세월호참사 직전 16개월간(2013년 1월 ~ 2014년 4월)의 급여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, 4·
16세월호참사 이후에도 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이
이
이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주소:

승선자와의 관계

이

연월	월급여액(원)	비고
월평균		

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.

이
의
도

근무처(직장)의 장 직인

직인

※ 비고: 승선자의 월급여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[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세무서·사업주 발급), 급여명세서(사업주 발급) 등]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라며, 배상금 지급신청인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